

『 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춘구 의원 외 6인

2. 제안이유

-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, 농업구조 및 농업위상의 변화 등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·농촌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,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농업·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,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, 건전소비 등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 (안제3조)
-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정참여 보장 및 농업 관련 주체간 협력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시장이 지역농업 육성발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5조 내지 제9조)
- 농정의 입안과 예산수립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(안 제10조)
- 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협의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함 (안 제11조 내지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가속화, 농업구조 및 농업위상의 변화 등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·농촌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,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, 건전소비 등 시장과 농업인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
 -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정참여 보장 및 협력 사항을 정하고
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 - 또한 농정의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하고
 - 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협의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이 제정될 시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됨.